

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,

다른 규정에 비추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(가)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

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-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펴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